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 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해관계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나 다름이 없고, ② 시정권고의 대상은 개인적 법익은 물론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해자 아닌 자의 신청을 허용할 수밖에 없으며, ③ 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미리 공표된 審議基準에 따라 심의되고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등 예방적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데에다¹²⁾, ④ 재심의 기회가 보장되는 등으로 그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

▶ 일부에서는 또, 언론중재위원회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 및 그 액수에 대해서도 중재할 수 있도록 한 것(제24조 제1항)은 법원의 권한과의 관계에서 적절치 못하며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하고, 아울러 仲裁制度를 폐지하고 調停制度만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언론중재법상의 중재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미리 중재에 승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법원이 아닌 제3의 判定機關에 의한 중재제도는 중재법으로써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없으며, 언론중재법상의 중재제도는 신속하고도 終局的인 분쟁해결을 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그 의미와 有用性이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3. 長期的으로 개정이 필요한 事項

가. 自由로운 言論活動의 보장

▶ 언론에 대하여 책임을 요구하는 것에 비례하여 그에 상응하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사회에 대한 비판자, 감시자, 여론형성자로서 언론 본래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정입법을 모색하여야 함

▶ 즉, ① 형법 제310조와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면책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한 제5조 제2항을 “언론의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 ② 민

12) 헌법재판소도 2006. 6. 29.자 결정에서 같은 이유로 이에 의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정보도청구권과 동일하게 단축하며, ③ 위자료의 高額化에 따른 언론의 부담 감소를 막기 위하여 위자료는 1인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④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직권 또는 언론사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언론보도의 목적과 경위, 언론사가 기울인 주의의 정도 및 그 資力, 피해자의 신분 및 그 재산 정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여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범위 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언론중재위원회의 中立性·獨立性 및 기능 강화

▶ 언론중재위원회는 방송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같은 獨立規制委員會 내지는 準司法機關으로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이에 관한 제도 연구와 개선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는바, 신속 저렴한 피해구제의 요청 및 언론의 특수한 지위 등을 고려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소송절차보다는 조정·중재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및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시정권고신청을 당해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법 제32조 제2항에 흡수하여야 함

▶ 즉, ① 중재위원의 위촉·추천권자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으로 격상하고, ② 政派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政黨員 지위를 상실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그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중재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며, ③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등의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전반에 대하여 법원 제소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하는 필요적 調停前置主義를 채택¹³⁾할 필요가 있음

13)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연도별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 비율은 62% 내지 68%이며, 언론중재법에 의해 조정대상에 포섭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동법 시행 후 1년 동안 총 305건이 조정신청되어 53.4%가 구제를 받았다. 전계 문화관광부 자료 및 2006. 8. 1.자 언론중재위원회 보도자료 참조.